

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

1

7~9년차 등록료 감면제도 도입 (안 제7조)

□ 개정 이유

- 최근 중소기업 단체, 국회 등을 중심으로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인 개인, 중소·벤처기업 등에 대한 등록료 감면 요구 지속
 - 현재 특허등록 후 6년차까지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, 개인·중소기업 등은 여전히 특허 유지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 제시

□ 개정 내용

-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권 연차등록료를 종전에는 4~6년차까지만 감면하던 것을 7~9년차까지로 확대

<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(안) 일부 >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특허료·등록료·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) ① (생 략)	제7조(특허료·등록료·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. 이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	②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개인, 소기업, 중기업, 공공연구기관, 전담조직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년분부터 <u>6년분</u> 까지의 특허료·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	9. <u>9년분</u>

□ 개정 효과

- 개인·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등록료 부담 감소로 권리유지기간이 증가하여 지식재산 권리 활용 및 사업화 촉진

□ 개정 이유

- 중소기업 등 감면 대상자가 일부심사등록출원(45,000원, 감면대상) 후 심사등록출원(94,000원, 감면대상)으로 보정할 경우, 출원료 차액(49,000원)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, 그 차액에 대해서는 감면 미적용
- 보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심사등록출원료가 감면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면하는 것이 타당
- * 중소기업 등 70% 감면자가 일부심사출원 후 심사출원으로 보정시 납부하는 금액 비교
(현행) 일부심사출원료 13,500원(70% 감면) + 출원료 차액 49,000원(미감면)
(개선) 일부심사출원료 13,500원(70% 감면) + 출원료 차액 14,700원(70% 감면)

□ 개정 내용

-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서 제출시 추가로 납부하는 출원료 차액에 대해 감면 적용

<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(안) 일부 >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특허료·등록료·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…(중략)… 출원료 , 심사청구료, 최초 3년분의 특허료·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.	제7조(특허료·등록료·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) ① 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(중략)… 출원료(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그 차액도 해당한다) , 심사청구료, 최초 3년분의 특허료·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. 이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	② (현행과 동일)
1~8. …(중략)… 출원료 , 심사청구료, 최초 3년분의 특허료·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…(이하생략)	1~8. …(중략)… 출원료(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그 차액도 해당한다) , 심사청구료, 최초 3년분의 특허료·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…(이하생략)

□ 개정 효과

- 감면대상 수수료에 있어서 동일한 형태의 출원에 대해 동일한 출원료를 징수함으로써 수수료 감면체계의 합리성 제고

□ 개정 이유

- 수수료 감면을 사후에 신청*하는 경우, 같은 이유로 여러 건의 사후감면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 건마다 신청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 서식 작성시 불편 존재

* 수수료 납부 당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에 감면금액 반환 요청 가능

□ 개정 내용

- 동일인이 동일 사유(사후감면 사유를 증빙하는 첨부서류가 동일한 경우)로 여러 건을 사후감면 신청시 일괄하여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,
-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

<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3호서식(안) 일부 >

현 행	개 정 안
[별지 제3호서식] 수수료 사후감면신청서 기재요령 2. 신청인란 <u>가.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</u> (생략) <u>나.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</u> (1) [신청인]란에 …(중략)……[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], …(이하생략). 4. [사건의 표시]란 제출인이 밝히려는 절차에 따라 [출원번호(등록번호)]란 또는 [심판번호]란에 다음 기재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. 5. [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]란 다음 예와 같이 수수료의 사후 감면을 신청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.	[별지 제3호서식] 수수료 사후감면신청서 기재요령 2. 신청인란 <u>[성명(명칭)]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(또는 법인의 명칭)을 적고, [출원인코드]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.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인 코드를 부여 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</u> 4. [사건의 표시]란 제출인이 밝히려는 절차에 따라 [출원번호(등록번호)]란 또는 [심판번호]란에 다음 기재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. <u>동일한 첨부서류로 여러 건의 수수료 사후감면신청을 한번에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작성합니다.</u> 5. [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]란 다음 예와 같이 수수료의 사후 감면을 신청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. <u>동일한 첨부서류로 여러 건의 수수료 사후감면신청을 한번에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작성합니다.</u>

□ 개정 효과

- 수수료 사후감면 서식 개선으로 출원인 편의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, 특허행정처리 부담 경감

□ 개정 이유

- 하나의 특허권(실용신안권)에 대하여 무효심판이 복수로 청구되어, 권리자가 각 무효심판마다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를 중복으로 하는 경우 정정청구료를 매 건마다 전액 부과하여 부담 발생
- 심결이 확정되면 정정의 소급효가 발생하지만 권리자는 확정 순서를 알 수 없어서 각 무효심판마다 모두 정정청구

□ 개정 내용

- 서류 원용절차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서 제출시 두 번째 정정청구부터는 정정청구료 면제

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·3조(안) 일부 〉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) ①·② (생 략)	제2조(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「특허법」 제82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③....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정정청구료	5.
가.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: 매건 3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. 다만,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(1)에 따른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2만6천원 <u><단서 신설></u>	가. <u>2만6천원으로 하되,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다른 무효심판절차 또는 정정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정정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.</u>
나. 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: 매건 4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. 다만,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(1)에 따른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3만6천원	나. <u>3만6천원으로 하되,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다른 무효심판절차 또는 정정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정정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</u>

현행
<u><단서 신설></u> 6. ~ 12. (생략) 제3조(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) ①·② (생략) ③ 「실용신안법」 제17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략) 5. 정정청구료 가.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: 매건 3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. 다만,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(2)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2만6천원 <u><단서 신설></u> 나. 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: 매건 4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. 다만,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(2)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3만6천원 <u><단서 신설></u> 6. ~ 12. (생략)

개정안
<u>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.</u> 6. ~ 12. (현행과 같음) 제3조(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③....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가. <u>2만6천원으로 하되,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다른 무효심판절차 또는 정정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정정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.</u> 나. <u>3만6천원으로 하되,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다른 무효심판절차 또는 정정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정정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.</u> 6. ~ 12. (현행과 같음)

□ 개정 효과

- 정정청구료 납부 부담 합리화로 특허·실용신안 권리자 보호 강화

□ 개정 이유

-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가 도입(발명진흥법 개정, '16. 4. 28.)됨에 따라 인증기업 지원을 위한 등록료 감면제도 마련

<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개요 >

- ▶ (인증대상)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
- ▶ (근거법령)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
- ▶ (운영체계) 주관(특허청), 운영기관(한국발명진흥회), 평가 전문위원(공모), 지식재산경영 자문회의
- ▶ (인증절차) 자가진단 → 서류심사 → 현장점검 → 인증여부 결정
- ▶ (지원시책) 우선심사 대상, 4~6년차 등록료 감면, 정부 지원사업 우대, 이행보증 우대, 방송광고비 할인, 대기업 협력업체 선정 시 우대 등
- ▶ (유효기간) 3년 (유효기간 경과시 지식재산경영 교육 이수 여부와 현장 재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연장)

□ 개정 내용

- 인증기업에 대해 4~6년차 등록료 20% 추가감면 (2년간 한시 적용)

* 기본 감면율 30% 포함시 최대 50% 감면되며,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원제도와 동일

<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(안) 일부 >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특허료·등록료·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) ①·② (생 략)	제7조(특허료·등록료·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4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「발명진흥법」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소기업, 중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는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·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	③ 선정되거나 「발명진흥법」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.....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□ 개정 효과

-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지원을 통한 인증제도 활성화로 지식재산 인식 및 활용도 제고

별도 전자출원 SW가 필요없는 전자출원을 위한 수수료 산정 (안 제2~4조)

□ 개정 이유

- 개인의 출원서 작성·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제공한 전자출원 SW를 이용하지 않고, 상용 SW(한글, MS Word)로 작성한 명세서·요약서 및 도면을 바로 제출하는 전자출원 시스템 도입
- 출원서는 웹에서 직접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, 명세서는 상용 SW로 작성한 파일을 단순 업로드를 통해 제출

□ 개정 내용

-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출원 SW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출원료는, 명세서 등을 전자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전자출원 SW를 이용한 전자출원료와 서면출원료의 중간으로 산정

	전자출원		서면출원
	특허청 제공 SW로 명세서 등 작성	상용 SW로 명세서 등 작성	
특허	46,000원	56,000원	66,000원
실용	20,000원	25,000원	30,000원
디자인	94,000원	99,000원	104,000원

* 서면출원은 20면 초과시 1면당 1,000원의 가산료가 적용되나, 전자화 후 면수 변동에 따른 수수료 반환·추가납부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료는 미징수

<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~4조(안) 일부 >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) ① 「특허법」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) ①.....
1. 특허출원료	1.
가. 출원서를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(이하 "전자문서"라 한다)로 제출하는 경우: 매건 4만6천	가. <u>다만, 전자문서로 제출된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·요약서 및 도면을 특허청에서 제</u>

현행
원 <단서 신설>
나. ~ 라. (생략)
2. ~ 15 (생략)
제3조(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) ① 「실용신안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실용신안등록출원료
가.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: 매건 2만원 <단서 신설>
나. ~ 라. (생략)
2. ~ 13. (생략)
제4조(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) ① 「디자인보호법」 제85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디자인등록출원료
가. 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: 1디자인마다 9만4천원 <단서 신설>
나. (생략)
다. 일부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: 1디자인마다 4만5천원 <단서 신설>
라. (생략)
2. ~ 13. (생략)

개정안
<u>공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건 5만6천원으로 한다.</u>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2. ~ 15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) ①
1.
가. <u>다만, 전자문서로 제출된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·요약서 및 도면을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건 2만5천원으로 한다.</u>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2. ~ 13. (현행과 같음)
제4조(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) ①
1.
가. <u>다만, 전자문서로 제출된 심사등록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도면을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건 9만9천원으로 한다.</u>
나. (현행과 같음)
다. <u>다만, 전자문서로 제출된 일부심사등록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도면을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건 5만원으로 한다.</u>
라. (현행과 같음)
2. ~ 13. (현행과 같음)

□ 개정 효과

- 개인이 전자출원을 통해 제출 가능한 명세서·요약서 및 도면의 파일형식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출원절차 유지